

『구미 하이테크밸리(구미국가 제5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요청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청 원 자 :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518번지 조현동외 159명

2. 소개의원 : 구미시의회 김영호 의원

3. 청원사유(내용)

- 2009년 6월 15일 구미 하이테크밸리(구미국가 제5단지) 개발사업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설명내용과 다른 주거지역이 축소된 산업단지계획(토지이용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편입주민들의 실망과 반발, 향후 생계대책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당초 설명 안 및 공동주택용지 1개 블록을 더 추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청원함.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9호
- 「지방자치법」 제73조
-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5. 검토의견

- 구미 하이테크밸리(구미국가 제5단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9년 9월 30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특별법」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되어 2014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정부에서도 분양면적의 확대, 산업
용지의 매각수익 재투자 등으로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통하여 산업단지 편입 주민들의 바
람인 주거지역 확대로 인한 향후 도시화와 함께 산업용지의 분양가
인하 방안 또한 절실히 요구되므로

구미시는 구미하이테크밸리(구미국가 제5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사업
사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여 사
전에 산업단지에 편입된 지역주민의 공람 및 의견수렴으로
산업단지계획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요구하며,

또한 향후 산업단지 완공 후 도시화로 인한 지역발전 및
분양가 인하방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역발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토지이용계획이 면밀히 재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본 청원을 구미시에 이송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